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권한의 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권한, 공보 게재의무, 등록 변경권한의 주체에 시도지사 외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개정)
- 등록증 교부권한과 등록증 교부사실의 공보 게재 의무, 등록 변경신청 시 새로운 등록증 교부권한 주체에 특례시장 추가하도록 규정
- 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신청기준 확대(안 제3조제4항제3호 개정)
-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사무소를 변경한 경우 등록변경 신청하는 기준을 동일 시·도 내에서 주된 사무소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
- 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유형 조건에 특례시 단위 추가(안 제5조제1호·제2호 및 제3호 개정)
- 공익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할 사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져야 할 사업 등 공익사업 유형에 특례시 단위도 추가하도록 규정

라.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추천·위촉권자에 특례시장과 특례시 의회의장 추가(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특례시장 소속하에 둘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 3인 추천권을 특례시 의회의장에게도 부여하며, 공익사업선정위원 위촉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마.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요청권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7조 제3항 개정)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최 요청권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바.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공익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사.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의 주체에 특례시의 장 추가(안 제12조 개정)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권한을 특례시장에게도 부여하도록 규정

아. 공익사업 관련 행정지원 요청대상에 특례시장 추가(안 제13조제1항 개정)

행안부장관의 행정지원 요청대상에 특례시장도 포함하도록 규정

자.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 마련(안 제3조 제1항 단서 신설)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등록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고, 사무소가 특례시에 소재한 단체는 사업범위가 그 특례시 내에 한정된 단체는 소관 특례시에 등록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4. 5. ~ 4.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에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시·도의 공보”를 “공보”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 또는 시·도”를 각각 “국가, 시·도 또는 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국적 또는 시·도”를 “국가, 시·도 또는 특별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에 따른”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 소속으로”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도”를 “시·도 또는 특별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장, 시·도의회 또는 특별시의회의 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 장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으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하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에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 단 체 명: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주 된 사 업:

5. 최초등록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절차) ①<u>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u> <단서 신설>	제3조(등록절차) ①<u>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는 -----</u> ----- ----- ----- ----- ----- ----- ----- ----- ----- ----- ----- ----- ----- ----- ----- ----- <u>다만, 비영리민간 단체의 사무소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에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범위가 해당 특례시에 한정되는</u>

1. ~ 5.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는 그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

--.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
공보-----

-----.

④-----

-----.

1. · 2. (현행과 같음)

3. -----
경우

4. (생 략)

⑤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변경의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

4. (현행과 같음)

⑤ -----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장은 -----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
-----.

1. 국가, 시·도 또는 특별시-----

2. 국가, 시·도 또는 특별시-----

3. 국가, 시·도 또는 특별시 -----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7조에 따른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

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회의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2. (생략)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생략)

④·⑤ (생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략)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④ (생략)

장 소속으로 -----
-----.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장, 시·도의회 또는 특별시의회의 의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의장이 각각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2. (현행과 같음)

3. --(시·도 또는 특별시)-----

-- 사람

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별시의장-----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u>법 제7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u>법 제7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12조(사업평가) <u>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매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u>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u>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u>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u> ----- --- <u>법 제7조제2항에 따른</u> ----- ----- -----. 1. ~ 7. (현행과 같음) ②<u>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u> 다음 각 호의 ---- -- <u>법 제7조제2항에 따른</u>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평가) <u>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u> --- ----- ----- -----.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 ----- ----- <u>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u> ----- ---.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연 락 처	(044) 205 - 3178